

## 비정규직 직원 전환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루터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제13조(임시임용)에 관한 세부 사항 중 루터대학교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이 지침은 루터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주관)** 이 지침은 총무처에서 총괄한다.

**제4조(전환)**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음의 각 호대로 진행한다.

- ① 업무상 공로가 인정되는 비정규 직원을 해당 부서에서 총무처로 추천
- ② 총무처에서는 직원인사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하여 안건 상정
- ③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후 해당 직원에 대한 논의 후 차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비정규직 직원 [업무 평가 시행](#)
- ④ 직원인사위원회 채점표 기준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추천
- ⑤ 총장의 승인 후 이사장에게 재청 요청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